

예산위원회 규정

제정 2024.01.04.

개정 2025.06.0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 중장기발전계획의 연관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기반으로 예산편성 및 예산운영 중 제2조(기능)에서 명시한 사항에 대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대학의 예산편성 및 예산운영 중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1. 예산 편성 시 예산신청 내역 점검
2. 예산신청 내역의 중복사항 점검, 사업별 예산 조정 등 조정의견 제시
3. 대학 예산정책 관련 자문
4. 재정운영 현황과 평가 내용의 점검
5. 기타 대학의 예산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른다

1.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내외로 구성하며, 교비회계 예산부서장과 산학협력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교비회계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2.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위원회는 위원장의 소집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6.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위원회는 대면, 비대면, 서면 등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9.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통해 정한다.

제4조(사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대학의 교비회계 예산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5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